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850,051,533	55,501,546
일반회계	1,584,195,994	47,525,880
특별회계	265,855,539	7,975,666
공기업특별회계	196,509,933	5,895,29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1,274,090	2,738,22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5,235,843	3,157,075
기타특별회계	69,345,606	2,080,368
교통사업 특별회계	22,840,082	685,20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75,788	44,274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961,457	88,844
대지보상 특별회계	400,000	12,000
기반시설 특별회계	199,744	5,992
수질개선 특별회계	41,468,535	1,244,05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7,175,937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4,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